



화재시 행동요령 (대피방법)



- 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2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3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4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5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6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7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만져 보고 뜨거우면 다른길을 찾고, 보통이면 통과합니다.
- 8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9 연기가 많을 때에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며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10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Tip!

소화기 사용법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등



소화전 주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

◆도로교통법 33조◆
20만원 이하 과태료



재래시장

소방차 통행라인(노란색)을
침범하지 않을 것

◆도로법 6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골목길 불법주차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

◆도로교통법 32조◆
2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 2018. 6. 27]

- ▶ 소방차로 인해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하지 않음
- ▶ 진로양보 안하는 행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편도 1차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편도 3차선 이상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선 통행)